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
----------	----

제출년월일 : 1999. 4.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도사무의 시군위임사무중 도로과소관 위임사무 일부가 '99.2.8 법률 제5894호로 도로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규정과 관련된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그동안 현실과 불부합되고 있는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관련업무 추가위임
 - 점용료징수제한, 변상금징수, 수수료징수, 과태료부과징수
- 도로법 제50조제5항 삭제에 따른 허가사항 삭제
 - 토지형질변경 허가
 -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중축등의 변경허가
 - 축목의 재식,벌채허가
- 도로법 제35조 삭제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 교량,도선시설,지하도,터널,삭도의 이용자에 대한 통행료 징수
- 지방도유지관리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환수
 -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운행 제한
- 지방도 노선이 변경된 폐도로 부지용도폐지 권한 위임
 - 도유재산(도로)용도 폐지

3. 의안전문 : 따로붙임

4. 관계법령발췌 : 따로붙임

- 도로법 제28조, 제35조(삭제),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 제54조, 제64조, 제77조의2, 제80조의2, 제86조의2,
-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도로과소관 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로법 제35조제1항, 제45조, 제50조, 제80조의2의 관련사무는 1999년 8월 10일 부터 시행 한다.

권 한 위 임 사 무

[별표 1]

주관과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로과	1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 가. 도로점용 허가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 나. 점용공사의 확인 다. 점용료의 징수 라. 점용료의 징수제한 마. 원상회복 바. 변상금의 징수 사. 수수료의 징수 아. 과태료 부과징수	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제64조 동법 제40조 제3항 동법 제43조 제1항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80조의 2 동법 제77조의 2 동법 제86조의 2
	2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다음행위금지에 관한 권한 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 증축등의 행위 다.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동법 제50조 제4항 동법 제50조 제4항 동법 제50조 제6항
	3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 ·용및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 가.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고의 수리 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수리 다.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라.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주관과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4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 가. 타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 라.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명령 마.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 명령 바. 도로에 관한 조사 사.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아.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감정,분할측량,보상금지급, 잔여지매입,소유권이전)	동법 제29조 동법 제31조 동법 제54조제1항 동법 제67조 제1항 동법 제75조 동법 제76조의2 동법 제78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 에관한특별법제3조
	5	○ 도유재산(도로)용도폐지	지방재정법시행령제87조및 도로법제28조·충청북도공 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행				조정			
주관과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주관과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도로과	1	(생략) 가. 도로점용 허가 나.-다. (생략) (신설) <u>라.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승인</u> (신설) (신설) (신설)	도로법제40조제1항 동법제45조	도로과	1	(현행과 같음) 가. 및 원인자 부담금징수에 관한 사무 나.-다. (현행과 같음) <u>라. 점용료의 징수제한</u> <u>마. 원상회복</u> <u>바. 변상금의 징수</u> <u>사. 수수료의 징수</u> <u>아. 과태료 부과징수</u>	도로법제40조제1항 및 제64조 동법제44조 동법제45조 동법제80조의2 동법제77조의2 동법제86조의2
	2	○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조치에 관한권한 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나.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허가 다. 축목의 재식, 벌채의 허가 <u>라.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u> 마.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위험을 예방 하기 위한조치	동법제50조제5항 동법제50조제5항 동법제50조제5항 동법제50조제4항, 동법시행령제27조 동법제50조제6항		2	○ 다음행위 금지에 관한권한 가. 행위 나. 행위 (삭제) (삭제) 다.	동법제50조제4항 동법제50조제4항 동법제50조제6항

현행				조정			
주관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주관과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 (생략) 가.-나. (생략) 다. <u>교량, 도선시설, 지하도, 터널, 삭도의 이용자에 대한 통행료 징수</u> 라. <u>도로의 구조 보전과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운행 제한</u> 마.-자. (생략) 차. <u>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매수 및 소유권이전)</u>	동법제35조제1항 동법제54조제1항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제3조		4	○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다.-사. (현행과 같음) 아.(<u>협의, 감정, 분할측량, 보상금지급, 잔여지매입, 소유권이전</u>)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제3조
	5	(신설)			5	○ 도유재산(도로)용도폐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 · 도로법제 28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法 令 拔 萃]

<道路法> [1999. 2. 8 법률제5894호 개정]

第28條(道路의 使用과 그 廢止) 管理廳은 道路의 使用을 開始 하거나 그 使用을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告하고 그 圖面을 一般에게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既存道路와 重複되게 路線이 指定 또는 認定되었거나 變更되었을 때에 그 重複되는 部分의 道路에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66.8.3, 95.12.6)

第35條(削除) 통행료의 징수

第40條(道路의 占用) ①道路의 區域안에서 工作物·物件·其他의 施設을 新設·改築·變更 또는 除去하거나 其他의 目的으로 道路를 占用하고자 하는 者는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을 수 있는 工作物·物件 其他의 施設의 種類와 道路의 占用許可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의 占用許可를 받은 者가 道路의 掘鑿 其他 形4質變更이 수반되는 工事を 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管理廳의 確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主要地下埋設物(이하 “主要地下埋設物”이라 한다)의 設置工事を 한 때에는 竣工圖面을 管理廳에 提出하여야 하며, 管理廳은 建設交通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保管·管理하여야 한다. (新設 93.3.10, 改正95.12.6)

④管理廳은 主要地下埋設物이 設置된 道路에 대하여 掘鑿工事を 수반하는 占用許可를 하는 때에는 당해 主要地下埋設物의 管理者에게 이를 通報하여야 한다 (新設 '95.12.6)

⑤ 削除(99. 2. 8)

第44條(占用料徵收의 制限)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이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3.3.10)

1. 公用 또는 公益을 目的으로하는 非營利事業을 爲한 경우
2. 災害 其他 特別한 事情으로 本來의 占用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경우
3. 國民經濟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公益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을 爲한 경우
4. 住宅에 出入하기 爲하여 通行路로 使用하는 경우로서 營利目的이 아닌 경우 (신설 99.2.8)

(全文改正 76.12.31)

第45條(原狀回復) ①道路를 占用하는 者는 그 占用期間이 滿了되었거나 占用을 廢止하였을 경우에는 道路를 原狀回復하여야 한다. 다만, 原狀回復을 할 수 없거나 原狀回復을 하는 것이 不適當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66.8.3, 93.3.10, 99.2.8)

②第40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 規定에 의한 道路의 原狀回復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93.3.10)

第50條(接道區域의 指定等) ①管理廳은 道路의 構造에 대한 損潰, 美觀의 保存 또는 交通에 對한 危險을 防止하기 爲하여 道路境界線으로부터 20미터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 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바에 의하여 接道區域으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66.8.3, 68.12.21, 99.2.8)

②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接道區域을 指定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告示하고 建設交通部令이 定하는바에 따라 이를 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99.2.8)

③削除(99.2.8)

④接道區域 안에서는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지 못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68.12.21, 99.2.8)

1. 土地의 形質을 變更하는 行爲
2. 建築物 其他의 工作物을 新築·改築· 또는 増築하는 行爲

⑤削除(99.2.8)

⑥道路의 管理廳은 土地·竹木·施設이나 建築物 其他 工作物(이하“施設等”이라 한다)의 道路의 構造나 交通의 安全에 對한 危險을 豫防하기 爲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施設等の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1. 施設等이 視野에 障礙를 주는 경우에는 그 障礙物을 除去할 것
2. 施設等の 崩壞로 인하여 道路에 危害가 發生되거나 發生될 憂慮가 있는 경우에는 그 危害를 除去하고 필요시에는 防止施設을 할 것
3. 道路에 土石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土砂等を 除去하거나 防止施設을 할 것
4. 施設等으로 인하여 道路排水施設에 障害가 發生되거나 發生될 憂慮가 있는 경우에는 그 障害를 除去하거나 防止施設을 할 것

第54條(車輛의 通行制限) ①管理廳은 道路의 構造를 保全하고 運行의 危險을 防止하기 爲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車輛(自動車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 및 建設機械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運行을 制限할 수 있다. 다만, 車輛의 構造 또는 積載貨物의 特殊性으로 認하여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 運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6.11)

②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行制限에 對한 違反與否를 確認하기 爲하

여車輛의 運轉者(建設機械의 操縱士를 包含한다. 이하 같다)에 對하여 積載量의 測定 및 關係書類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으며 運轉者는 正當한 事由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95.1.5)

③管理廳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運行의 許可를 함에 있어서 運行路線·運行時間 및 運行方法等에 관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④管理廳은 運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行制限을 違反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積載量의 測定 및 關係書類의 提出을 正當한 事由없이 拒否한 때에는 당해 車輛의 使用停止를 地方警察廳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新設 95.1.5)

⑤第53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車輛의 運行制限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全面改正 93.3.10)

第64條(原因者 負擔金) 他工事 또는 他行爲者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道路工事의 費用은 他工事 또는 他行爲의 費用을 負擔하여야할 者에게 그전부 또는 일부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第77條의2(手數料의 徵收)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定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1.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工事의 許可를 申請하는 者
2.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占用의 許可를 申請하는 者
3. 第54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運行의 許可를 申請하는 者

②第44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減免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93.3.10)

第80條의2(辨償金의 徵收)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 許可를 받지 아니고 道路를 占用한 者에 對하여는 그 占用期間에 對한 占用料의 100分の120에 相當하는 金額을 辨償金으로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徵收方法은 道路占用料 徵收의 예에 의한다. (本條新設 76.12.31, 改正 99.2.8)

第86條의2(過怠料) ①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95.12.6)

1.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許可面積을 超過하여 占用한 者
2. 第40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竣工圖面을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圖面을 提出한 者
3. 削除(99.2.8)

4. 第40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者의 立會없이 掘鑿工事を 施行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削除(95.12.6)

2.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物件等を 道路에 一時 積置한 者

3. 第4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을 받지 아니한 者

4.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原狀回復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道路의 管理廳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5.12.6)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の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管理廳에 異意를 提起 할 수 있다. (改正 95.12.6)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意를 提起한 때에는 管理廳은 遲滯없이 管轄 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5.12.6)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意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5.12.6)

(本條新設 93.3.10)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關한特例法>

第3條(損失補償의 原則)①公共事業을 爲한 土地等の 取得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土地等の 所有者가 입은 損失은 事業施行者가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은 다른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現金으로 支給한다. 다만, 事業施行者가 國家·地方自治團體·韓國土地公社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政府投資機關 및 公共團體인 경우로서 土地等の 所有者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事業施行者가 發行하는 債券으로 支給할 수 있다. (改正 91. 12.31, 95.1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은 土地等の 所有者에게 個人別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土地等の 所有者 個人別로 補償額을 算定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가 債券으로 補償金을 支給할 경우에는 正當한 補償이 될 수 있도록 債券의 償還期限·利率等を 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償還期限은 5年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定하여야 하며, 利率은 債券發行 당시 1年만기 定期預金 金利 이상이어야 한다. (新設 91.12.3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용도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1의 경우에는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용도폐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98.7.16)

1. 도로·하천·제방·구거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2.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에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별시·직할시 이상지역 : 30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개정 94.10.14)
2. 일반시지역 : 600제곱미터이하 토지
3. 군지역 : 900제곱미터이하 토지
4. 시가1,0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 (개정 94.10.14)

④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